#### 참 고

###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Q&A

### I 신청자격 관련

###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?

o 입주자격(소득 및 자산 검증, 수급자 여부 등)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 (자격조회, 가점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)

구분	검증대상 부모 범위	비고
부모 모두 계신 경우	-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	
부 사망	- 모(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)	
모 사망	- 부(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)	
부모 사망	- 없음	부모 무주택
부모 이혼	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-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직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- 이혼 후에도 부모가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시 부모 모두 검증	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모로 판단
부모 이혼 후 사망	-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*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	부모 무주택
-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부모 이혼(사망) 후 제모 또는 계부 (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		
부모 비혼	- '부모 이혼' 기준을 적용 (부모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부모의 혼인 및 이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)	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존재하지만 비혼인 경우

### 2 부모님이 수급재또는 차상위계층)입니다.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?

o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\*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30세 미만(미혼)인 경우 1순위에 해당 됩니다. (\* 차상위계층도 동일)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## < 예시 >

-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30세 미만 청년 → 수급자 가구 O
-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30세 미만 청년 → 수급자 가구 O
-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30세 이상 청년 → 수급자 가구 O
-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30세 이상 청년 → 수급자 가구 X

#### 3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.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?

 신청자 본인이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
####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신청자격이 되나요?

- o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- \* 가점 항목 "부모 무주택 여부"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.

#### 5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
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(입주)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.

#### 6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?

○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(매입임대주택 포함)에 ① 계약자(임차인)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 ② 계약자(임차인)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(매입임대주택 포함)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.

#### 7 18세 대학생입니다.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?

○ 대학생, 취업준비생인 경우 18세 이하, 40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.
 재학/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(父) 또는 모(母)(또는 후견인)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.

#### 8 어떤 지역에 신청가능한가요?

ㅇ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### 9 '대학생(또는 취업준비생)'과 '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'둘다 해당되는데 무엇으로 신청하면 되나요?

o 둘다 해당되면,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대 학생,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10 40세 취업준비생입니다. 졸업·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o 아래의 졸업·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,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.

구분	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정 학교	
대학교	-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 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 * 사내대학, 대학원대학, 해외대학, 대학원, 학점은행제 제외	
고등·고등기술학교	-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방송통신고등학교, 특수학교, 대안학교 - 고졸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* 중학교,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	

#### 11 대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o I-10번 항목의 대학교와 동일합니다.

#### 12 공동거주형 우선공급은 무엇인가요?

o 공동거주형 주택에 형제자매(각각 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이어야 함)가 신청한 경우, 예비자로 선정된 형제자매 중 한명의 순번이 되었을 때 형제 자매 둘다 해당 주택에 계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공동거주형 호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### 13 형제, 자매 또는 남매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?

ㅇ 형제,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.

#### 14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?

o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,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, 소득, 자산, 무주택 여부,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순위 오류 시 무효처리)

#### 15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?

-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\*의 3배수\*\*로 모집합니다. 따라서 공급 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·입주가 가능하며,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.
  - \*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, 기존 거주자 퇴거,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- \*\*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o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,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.

#### 16 주택군은 무엇인가요?

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.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.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.

#### 1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o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
구분	구비서류
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	<ol> <li>(인감증명방식) 본인(신청자)의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, 인감도장 및 위임장 (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)</li> <li>(본인서명방식) 본인(신청자)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본인(신청자)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),</li> <li>*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</li> <li>③ 공통: 본인(신청자) 및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</li> </ol>

#### 18 보장시설 수급자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?

 보장시설 수급자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,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
# Ⅱ 자격검증 관련

#### 1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o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,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'사회보장정보 시스템'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.

#### 2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?

o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,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.

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"소득금액 증명"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,

-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,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,
  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,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,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.

## 3 자격검증 범위(대상)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?

ㅇ 주택소유,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.

구년	ŧ	1순위 (수급자 가구 등)	2순위	3순위
	범위	가구	본인과 부모	본인
소득	기준	수급자 등 여부 판단	검증대상자 수에 따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- (1인) 4,317,797원 - (2인) 6,024,703원 - (3인) 7,626,973원	1인가구 소득기준 - (1인) 4,317,797원
총자산	범위	-	본인과 부모	본인
	기준	검증안함	33,700만원	25,400만원
자동차	범위	-	본인과 부모	본인
	기준	검증안함	3,803만원	3,803만원
주택소유 여부	범위	본인	본인	본인
	기준	무주택	무주택	무주택

####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검증 관련 부모 범위는?

o I-1번 항목의 부모 범위와 동일합니다.

#### 5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가구원수 및 자격검증은?

○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(父)또는 모(母)만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.

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(父) 또는 모(母)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.

#### 6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?

-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부(父) 또는 모(母)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, 이혼한 부모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 직전에함께 거주하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.
- ※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은 신청자(자녀)가 행정복지센터 에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)

#### 7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가구원수 및 자격검증은?

-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,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(父) 또는 모(母)와 계모 또는 계부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(父) 또는 모(母)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포함됩니다.

# 8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·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?

o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·자산검증이 불필요합니다.

### Ⅲ 동일 순위 경쟁시의 배점 관련

-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점수와 실제 서류제출한 점수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?
-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, 증빙
   이 부족하거나 미 제출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,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- ※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.
- o 한편, 소득수준 관련 배점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와 자격검증 결과 확인 된 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검증 결과 확인된 점수로 변경되며, 그 과정 에서 별도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## 2 소득기준의 50% 금액은 얼마인가요?

o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의 50%를 기준으로, 1인가구는 20%p, 2인가구는 10%p 가산 적용합니다.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
소득 50%	2,518,715원	3,286,202원	3,813,487원

#### 3 가점 계산 관련 부모 범위는?

o I-1번 항목의 부모 범위와 동일합니다.

### 4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o 신청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.

#### 5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나요?

o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납입횟수에 따라 배점이 결정 됩니다. 그리고, 납입횟수는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
## Ⅳ 임대기간,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

###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

o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40% 수준(2,3순위는 50% 수준)으로, 보증금은 100만원(1순위)/200만원(2,3순위)입니다.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.

#### 2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- ㅇ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
  - **(전환한도)** 월임대료의 최대 60%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. (단,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)
  - **(전환이율)** 연 7%
  - (계산방법) 임대보증금 증액분 × 7%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 ※ (예시)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,500원 감소

### 3 계약은 총 몇 회 가능한가요?

o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총 10년이며, 이는 주택 당 거주기간이 아닌 지원자의 총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. (임대기간 2년, 총 4회 재계약 가능) 단,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 가능합니다. (총 9회, 최장 20년 거주)

#### 4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- ㅇ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.
- 단, 주변 시세 50%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2, 3순위자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대조건이 주변 시세 40% 조건으로 변경됩니다.
   반대의 경우(재계약 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)는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.

### **5** 군 입대,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 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o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.
- o 그러나 군 입대,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. (단, 반환시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)

#### 6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?

o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.